

## ●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6-1호

「전파법」 제21조(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) 제5항에 따라 무선국(항공국)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(고시대상무선국), 제35조(무선국의 고시사항)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1월 16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### 항공국 변경허가 고시

#### 1. 허가 연월일, 허가번호, 시설자의 명칭, 무선국 종별

허가 연월일 (변경 허가일)	허가번호	시설자명칭	무선국 종별 및 명칭	비고
2026.1.12.	33-2020-26-0000002	중앙 119구조 본부장	항공국/중앙소 방울산항공대	안테나 변경

#### 2. 무선설비의 설치장소, 호출명칭

허가 번호	설치장소	호출명칭
33-2020-26-0000002	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산현출강길 73, (출강리)	중앙소방울산 항공대

#### 3. 주파수, 전파의 형식, 점유주파수 대역폭, 안테나 공급전력

허가 번호	주파수	전파형식	점유주파수 대역폭	안테나 공급전력	비고
33-2020-26-0000002	121.500				
	122.000				
	123.100				
	123.375	6K00A3EJN	6kHz	8W	
	127.800				
	129.325				
	130.125				